

방문예약 적체 해소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
외국인등록(거소신고) 신청 한시적 비예약제 시행 알림

- 코로나19 관련 방역 완화로 비자발급 제한이 완화('22. 6.)되면서 체류외국인 증가 및 관련 체류민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등록 신청 등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력 활용도가 높은 관련 업계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예약 적체로 인한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'외국인등록 업무에 대한 한시적 비예약제' 운영을 시행합니다.
 - (대 상) 출입국관리법 제31조(외국인등록) 및 재외동포법 제6조(국내거소신고)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대상자
 - (예 외) 아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전 방문예약, 단체접수 등 적용
 - ① 각종 체류허가(체류자격변경 및 자격부여 등) 신청 시 외국인등록(거소신고) 업무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
 - ② 외국인 유학생(D-2, D-4) ※ 유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 유학담당자가 외국인등록 단체접수 신청 가능
 - (방 법) 사전 예약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, 당일 번호표를 발급받아 방문순서대로 대기 후 접수
 - (시행일) 2023. 1. 2.(월) ~ 별도 공지 시

※ 당부사항

- 기존에 방문예약을 신청하신 경우, 비예약 방문에 따른 외국인등록(거소신고) 후 기존 예약 건은 필히 취소하여 다른 민원인이 해당 예약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비예약제 시행으로 일시에 다수의 민원신청이 집중될 경우 등록업무 과부하 및 당일 처리가 불가하여 재차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, 혼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관서 방문일을 적절히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